

건강은 자기가 책임져야

-보건증 발급 및 소지제도 폐지

「위생 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의 개정으로 기존의 국가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8월 29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수첩(일명 보건증) 발급 및 소지제도 폐지, 건강진단의료기관 지정제 폐지, 건강진단 실시 의료기관이 진단 결과를 관할보건소에 통보하는 제도 폐지 등이다.

건강진단수첩 발급 및 소지 제도는 지난 1978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위생분야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98년 말 현재 10만 8천여명의 특수업체부, 유흥접객부, 다방종사자, 숙박업종사자, 안마시술소종사자 등 성병검진 대상자와 86만 9천여명의 이·미용종사자, 식품위생업종사자 등 일반검진대상자 97만7천여명이 건강진단수첩 소지대상자였다. 그 가운데 성병건강진단대상자는 각각 3개월에서 6개월에 한번씩 혈청검사를, 1주에서 6개월에 한번씩 성병검사를 받아야 했다. <표 1>

이 제도에 따라 검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등의 성병감염 여부를 알게되는 성과를 거두고 그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도입 후 지난 21년 동안 수차례 개정된 후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 정기검진 대상자(특수업체부, 유흥접객원 등)의 보건소 등록관리와 일반검진대상자에 대한 보건증 발급을 통한 사후관리라는 점과 공중보건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특정 업종 종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보건증 미소지를 발미로 한 공무원들의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말썽이 잇따라 여성계 등에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건증 소지의무가 전면 폐지되고 건강진단의

료기관 지정제도도 함께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대상자는 종전처럼 정기검진을 받긴 하지만 병·의원과 보건소 등 검진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미용업 종사자 9만여명에 대해서는 보건증 소지의무와 함께 정기검진진단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정기건강검진 대상자들이 검진 의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검진의무를 위반한 업주와 종업원에게 물리는 벌금을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인상하는 등 검진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하지만 지난 1998년의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에서 무료로 실시하였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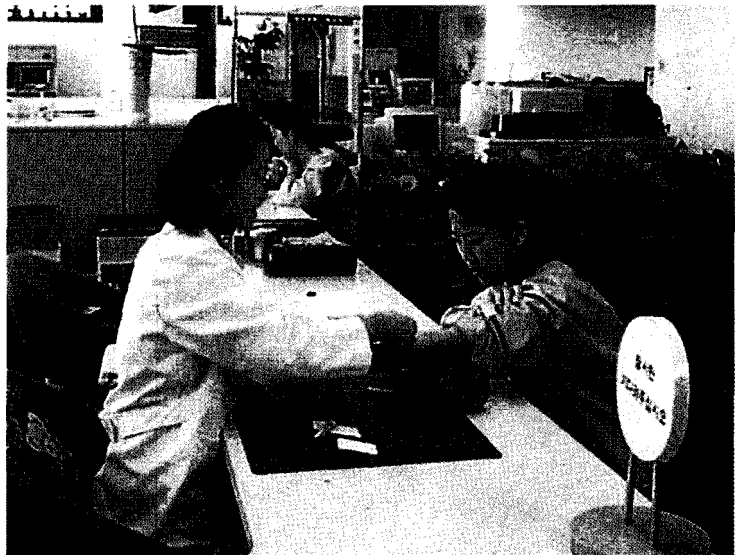
표1 기존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 진단항목별 회수

건강진단 대상	혈청검사	STD 검사
특수업체부	1회/3개월	1회/1주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1주
여관업 및 여안숙업 여자종업원	1회/3개월	1회/5일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1회/3개월	1회/3일
다방종사자	1회/3개월	1회/6일

병검진과 치료가 유료화 하여 특수업태부 등 영세계층이 대부분인 정기검진 대상자들이 검진을 소홀히 할 것이 우려된다. 또 검진대상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국가차원의 정기검진, 무료치료 및 사후관리 정책이 자연스럽게 개인차원의 「자발적 검사 및 건강관리」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에이즈 및 성병의 감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성병 및 HIV 관리사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병과 HIV의 감염 규모와 변동양상, 성행태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 그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성병검진 대상자 및 위생업소종사자들에 대한 성병과 HIV 검사가 검사에 그쳤을 뿐 이에 대한 자료분석과 체계적인 조사연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 질병의 감염률이나 위험인자 파악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HIV 감염 및 성매개질환에 대한 감시체계구축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HIV/AIDS 감시체계 구축> 계획을



건강진단수첩 발급 및 소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책임지는 자율의식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세워놓고 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병 및 HIV의 감염 규모와 변동양상, 성행태에 대한 파악”을 목표로 고위험집단 및 일반환자 대상으로 성병 및 HIV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1999년 7월부터 2001년 12월 까지 2년 6개월 동안 실시되는 이 사업은 특수업태부 및 성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소 중심 STD/HIV 감시체계를 구축(1999년 7월), 성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초의사 감시체계를 구축(2000년 1월), 대학병원 중심의 보초감시체계 구축(2000년 7월) 등 3단계로 실시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종합화된 성병 및 HIV 감시체계를 확립한다

는 목표이다. 이 사업에는 윤락 여성을 관리해 오던 전국 12개 지역의 29개 보건소가 국립보건원과 협조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는 성병검진대상자와 각종 의료기관을 방문한 성병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1주일에 한번씩 국립보건원에 검사결과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강진단수첩 발급 및 소지제도가 규제개혁과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21년만에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책임지는 자율의식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A

손미선 / 본지 기자